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공고 제2026-119호

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고지서(독촉장)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고지서(독촉장) 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으나,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,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11. 16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

1. 건　　명: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고지서 체납처분 관련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
2. 근　　거: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동법 제62조, 행정절차법 제14조,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: 붙임(공시송달자 명단)
4. 공고기간: 2026. 11. 16.~2026. 11. 30. (15일간)
5. 납부안내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4층 고용관리과(분평동, 청주지방합동청사)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6.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4층 고용관리과 김태훈(043-299-111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